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설명 자료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



국민일보
www.kmib.co.kr

인쇄 취소

지역 중소기업 복지 격차 완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협약

입력 2021-08-31 14:00



충남도와 도내 3개 시군, 기업 관계자 등이 31일 충남도청에서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충남도와 도내 3개 시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17개 중소기업은 31일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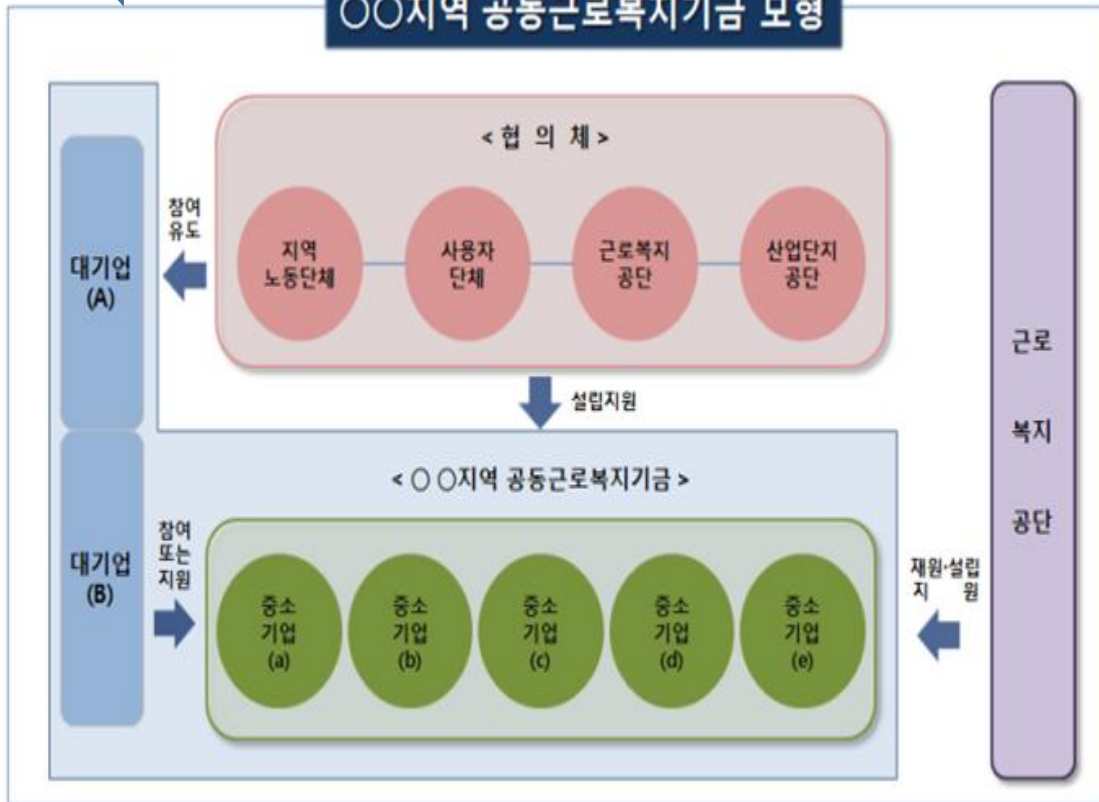
양승조 지사와 김동일 보령시장, 황선봉 예산군수, 고광훈 대전고용노동청장, 신동현 충남중소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가 겪는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은 향후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운영하게 된다.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정부 모델

〇〇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 모델



충남 모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계획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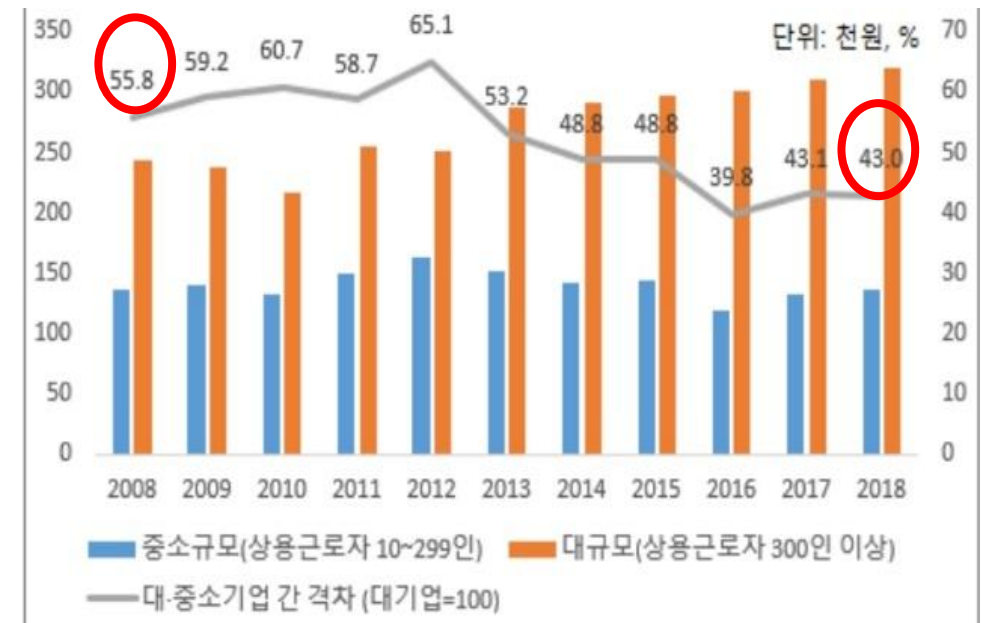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경쟁심화로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 지속

[충남 중소기업(1인당) 영업이익 변화추이]



자료 : kisvalue, 2000~2018

대·중소기업 간 법정외 복지비용 격차의 변화추이(2008~2018년)



출처 :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2008~2018)

□ 추진배경

➡ 노동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충남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 · 운영하고 정부 재정지원 확보하고자 함

❖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 중소기업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참여기업, 대기업(도급업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은 경우, 출연금의 100%범위 내에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전국 공동근로복지기금 추이

▶ 최근 3년간(21~23년) 388개 근로복지기금 출연금 880억원→622억의 복지비 지원
(총 1,502억원, 3,610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지원으로 사용됨)

□ 정부지원금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설립·출연 유형 및 지원한도)

■ 둘 이상의 기업 간 출연

- 대기업+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상생형중견기업 포함*) 등

* '22년 부터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5개소 이상10개소 미만 또는 100인 이상500인 미만	10개소 이상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총 한도	2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기간	설립일부터 3년	설립일부터 3년	설립일부터 4년	설립일부터 5년

참여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며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1,500인 이상인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인 경우 설립일부터 7년, 30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이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출연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5개소 이상 10개소 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한도	매년 2억원	매년 3억원	매년 5억원	매년 10억원
기간	매년 한도 내에서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상생영중견기업 포함) 공동기금에 출연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10개소 미만 또는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한도	매년 2억원	매년 4억원	매년 6억원
기간	설립일부터 3년(매년 한도 내에서 지원)		

□ 추진방향

- ❖ 중소기업 중 소규모 사업장(50인 이하)를 중심으로 참여기업 발굴
 - ➡ 참여의향이 높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7호 설립을 지원하고
2025년 상반기 정부지원금 확보에 총력 ⇒ 정부지원에 따라 법인설립시기 조율
- ❖ 고용노동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기준의 4번째 요건을 충족하도록 참여 사업장 발굴
 - 참여사업장수가 30개소 이상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수가 1,000명 이상
-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고려한 출연 계획 수립
 - 출연금 1인당 1,000,000원 (중소기업 400,000원, 시군 400,000원, 도 200,000원)
-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는 법인설립 전까지만 가능하고
신규기업의 중간 참여는 안되며, 참여기업의 중간 탈퇴는 가능

□ 사업 개요

- **(사업명)**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N호법인) 설립 운영 및 출연
- **(사업기간)** 20xx. xx. xx. ~ 20xx.xx.xx.(6년간, 계속사업)
- **(사업내용)** 중소기업·도·시군의 공동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복지기금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고용유지 및 복지사업에 활용
- **(참여규모)** X개 시군(충남도내 기초지자체)
N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30개 이상(수혜노동자 500명 내외)
※ 최종 참여기업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출연기준)** 중소기업 출연금과 1:1.5 매칭 원칙(최대 고용노동부 지원기준 한도)
 - 중소기업(400,000원/1인당), 도(200,000원/1인당), 참여시군(400,000원/1인당) + 정부지원

참고 1

고용노동부의 공공근로복지기금 지원기준(2021년~)

구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기 준	비 고																			
	■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 (고시 제8조제1~2항, 고시 제9조제1항) <예시> · A대기업 + B중소기업 · C중소기업 + D중소기업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공동기금법인에 지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th></tr><tr><th>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th><th>5개소 이상 10개소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th><th>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th><th>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th></tr><tr><td>한도</td><td>2억</td><td>5억</td><td>10억</td><td>20억</td></tr><tr><td>기간</td><td>3년</td><td>3년</td><td>4년</td><td>5년</td></tr></table>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5개소 이상 10개소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한도	2억	5억	10억	20억	기간	3년	3년	4년	5년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 → 30억, 7년 (고시 제8조제3항 고시 제9조제2항)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5개소 이상 10개소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한도	2억	5억	10억	20억																		
기간	3년	3년	4년	5년																		

□ 기금 조성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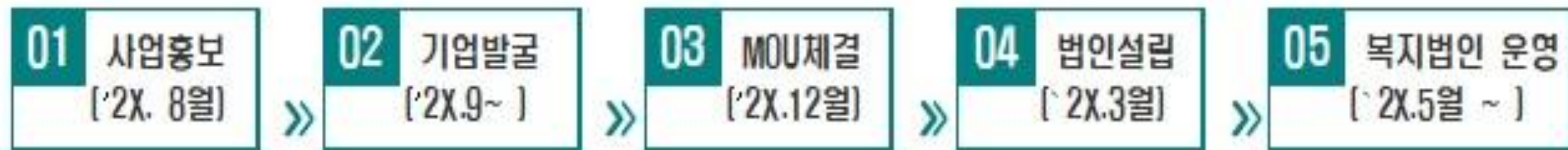
- (기금조성) 20XX. ~ 20XX.(5년간) ※ 관리권한 : 민간(법인)
- (출연기준) 중소기업 출연금과 1:1.5 매칭 원칙(최대 고용노동부 지원기준 한도)
 - 지자체 출연금은 도:참여 시/군(0.5:1)로 부담, 노동자 1명당 400,000원을 기준으로 출연
- (출연계획) 1명당 1,000천원(참여기업 400천원, 시군 400천원, 도 200천원)
 - ↳ 정부지원은 신청법인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1명당 750천원(신청 금액의 75%)
- (출연기금) 총 5년간 35.475억 조성 / 출연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연도	계	중소기업	지방비	정부지원 (국비)	비고
계	35.475억	11억	9.9억	14.575억	예시) 1) 기업출연금 : 550명×0.4백만원 = 2.20억원 2) 도비출연금 :1.10억원, 시군 출연금: 2.20억원 3) 정부지원금 :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1~3년차 75%, 4~5년차 50% 기준
20XX년(안)	9.625억	2.20억 ¹⁾	3.30억 ²⁾	4.125억 ³⁾	
20XX년(안)	9.625억	2.20억 ¹⁾	3.30억 ²⁾	4.125억 ³⁾	
20XX년(안)	9.625억	2.20억 ¹⁾	3.30억 ²⁾	4.125억 ³⁾	
20XX년(안)	3.3억	2.20억	-	1.1억	
20XX년(안)	3.3억	2.20억	-	1.1억	

□ 기금 운영 계획

- (원 칙) 기업의 출연금 이상을 복지기금으로 지원하되 기금의 조기 고갈을 방지하고 향후 5년 이상 운영할 기금 조성을 위해 당해년도 복지비 지출을 줄임
- (운영주체)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위탁관리→ 사단법인 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
- (지 급 액) 노동자 1인당 출연금의 2~2.5배 이상 지급(년800,000원~1,000,000원)
 - 다만, 복지비 지급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추진
- (지급방법) 년 3회, 지역화폐(설, 근로자의 날, 추석)
- (운 영 비) 총 기금의 5% 이내
- (적 립 금) 총 기금의 10% (당해년도 출연금의 90%까지 복지비 지급 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해년도 복지비+운영비+적립금을 제외한 금액
- 운영위원회 : 총 14명(임원진2, 지역대표+노동자대표 6, 지자체4, 감사2)

□ 추진 일정



1단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 홍보(참여 시군 발굴, 중소기업 대상 홍보)

2단계 시군(N개시군)+ 중소기업연합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참여기업 발굴(사업 설명회)

3단계 도+시군+참여중소기업+고용노동부 업무협약(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운영, 출연금 확정)

4단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근로복지공단 컨설팅 지원, 명칭)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단계 지역 공동근로복지법인 운영(정부지원금 신청, 복지지원금 지급, 적립금 운영)

□ 기대효과

- 수혜 중소기업 노동자에 노동복지지원금 지급 : 500명 내외 혜택
 -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질소득 증가에 기여(년 1백만원 상당)
- 중소기업은 1인당 400,000원 출연으로 1,750,000원의 복지비 확보
- 중소기업간 협력모델 발굴과 복지격차 완화로 양극화 해소에 기여
 - 지역복지 실현과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로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증대
 -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및 양극화 해소 토대 마련
- 지자체의 복지기금 출연으로 정부지원금 확보,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
 - 정부지원금 16억 확보로 지역 중소기업노동자 노동복지지원금 지급액 확대

감사합니다!

힘센충암
대한민국의 힘